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 건 2024누713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피고, 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0구합56827 판결

변론종결 2025. 7. 17.

판결선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쪽 5줄과 6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 7, 14,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출자자들'이라 한다)가 각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인 사실, 출자자들이 원고의 설립에 앞서 2010. 8. 12. 체결한 출자자협약에서 상법 및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것을 결의하기로 한 사실(출자자협약서 제19조 제1항), 원고 정관 제2조 제1호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를 4개의 구역(I, J, K, L)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16. 11. 30.경부터 2019. 3. 28.경까지 각 구역에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 4쪽 10줄 "한편" 다음에 "갑 제6호증의 1,"을 추가한다.

○ 5쪽 3줄의 "판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가 설립 무렵 ○○세무서장에 제출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와 D 사이에 자산관리회사인 D가 자산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1조 제4항), D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산을 D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여 원고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13조 제1호, 제3호)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 5쪽 5~7줄의 "그러나 설령 ... 사항일 뿐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설립목적 또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내지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일 뿐이다.』

○ 7쪽 2줄의 "을 제1호증의 3"을 "갑 제14호증의 1"로 고친다.

○ 7쪽 14줄의 "2017두47403 판결"을 "2017두47403 판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재판장 판사 윤○○

 판사 김○○

 판사 김○○



별지 1

목 록

순 번	세 목	본세(원)	가산세(원)		고지세액(원)
1	취득세	441,425,990	과소신고	44,142,590	725,483,600
			납부불성실	239,915,020	
			소 계	284,057,610	
2	농어촌 특별세	7,357,100	과소신고	-	11,371,130
			납부불성실	4,014,030	
			소 계	4,014,030	
3	지방 교육세	73,571,000	과소신고	-	113,556,830
			납부불성실	39,985,830	
			소 계	39,985,830	
합 계		522,354,090		328,057,470	850,411,560

끝.